

## ●국가유산청공고 제2024-0122호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8월 30일

국가유산청장

###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,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조문	법률명	개정내용(통합 내용)
제1조	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	·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전환함 ·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구분
제2조	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	·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
제3조	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	·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문화유산위원회로 이관

#### 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‘통합입법예고 - (부처)입법예고’ 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
- 전자우편 : jk2434@korea.kr
- 팩 스 : 042-481-3128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hs.go.kr>) ‘행정정보-법령정보/입법예고’ 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(전화 042-481-311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